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 행정사무감사 중점확인 사항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2025. 6

용 강 동

#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동 감사 중점확인 사항

◇ 감사대상기간: 2022. 1. 1.~2025. 4. 30.

연번	직위	성명	중 점 확 인 사 항	페이지
1	위원장	최은하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총괄	
2	부위원장	오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등록 및 관리실태</li> <li>- 장애연금, 장애수당 지급현황</li> <li>- 복지카드, 고속도로할인카드, 자동차표지 교부 등</li> <li>- 장애인일자리</li> </ul>	1-3
3	위원	권인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근로사업 운영실태</li> <li>○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li> </ul>	4-6
4	위원	김승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연금 지급관리</li> <li>- 지급기준 및 접수실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li> <li>○ 효도밥상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7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li> </ul>	7-8
5	위원	한선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SOS사업 운영 실적</li> <li>○ 긴급복지 지원실태</li> <li>○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li> </ul>	9-11
6	위원	고병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뿌리복지동행센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실태 및 실적</li> <l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통장 운영</li> <li>○ 후원(따뜻한겨울나기 등) 및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사업</li> </ul>	12-16
7	위원	차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복지 추진실태</li> <li>- 임대주택, 집수리사업, 주택 바우처 등</li> <li>○ 경로당 관리 현황</li> </ul>	17-18
8	위원	장정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신청·지급현황</li> <li>○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결연사업</li> <li>○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지원 실적</li> <li>○ 저소득주민(독거노인 포함) 방문행정</li> </ul>	19-24
9	위원	장영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관리 진행현황</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한부모 신청·접수 추진실태</li> </ul>	25-26

**중점확인사항** (오욕자 위원)  
 2-1. 장애인 등록 및 관리실태  
 - 장애연금, 장애수당 지급현황  
 - 복지카드, 고속도로할인카드, 자동차표지 교부 등  
 - 장애인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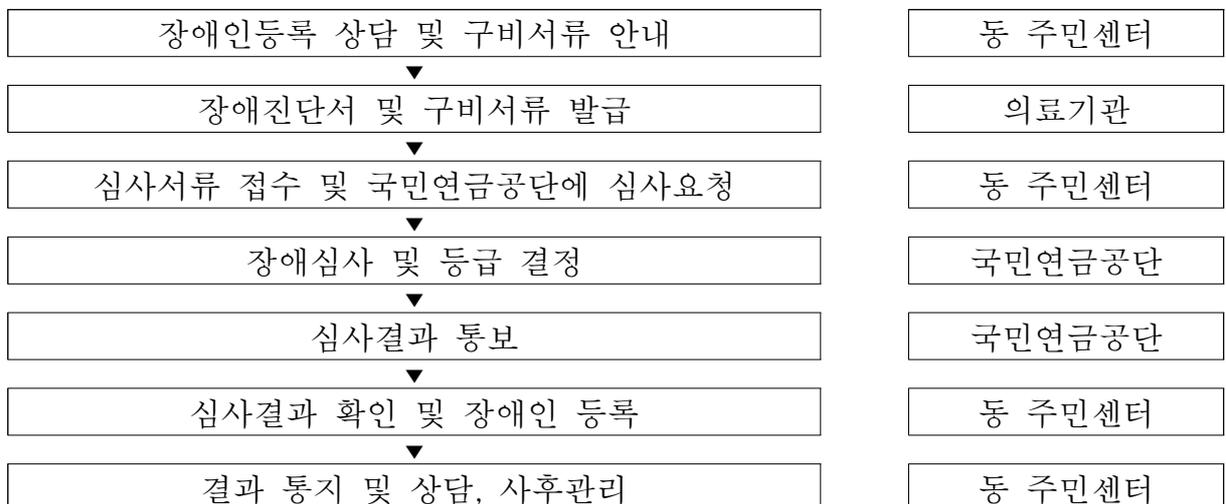
2-1. 장애인 등록 및 관리실태

■ 장애인등록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0조
- **등록대상:**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으며, 전문의 진단결과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한 자
- **등록 장애인 현황(2025. 4.30. 기준)** (단위:명)

구분	성별			장애 정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595	336	259	202	108	94	393	228	165
<b>합 계</b>	<b>지체장애</b>	<b>뇌병변</b>	<b>시각장애</b>	<b>청각장애</b>	<b>언어장애</b>	<b>신장장애</b>	<b>심장장애</b>		
595	243	48	72	109	10	30	1		
<b>호흡기 장애</b>	<b>간 장애</b>	<b>안면장애</b>	<b>장루,요루 장애</b>	<b>뇌전증</b>	<b>지적장애</b>	<b>자폐성 장애</b>	<b>정신장애</b>		
0	0	1	3	2	38	20	18		

○ 등록절차



■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현황

○ 관련근거: 장애인연금법 제1조(목적), 동법 제2조 제1호(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2025.4.30. 기준)

구분	장애인연금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중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금액	월 50,000원 ~ 432,510원(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장애(아동)수당
지원자격	- 장애수당: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중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 장애수당: 월 60,000원(*2022년 지급액: 월 4만원) - 장애아동수당: 11만원~22만원(장애유형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현황 (단위:건,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장애인연금	657	200,619	609	198,036	534	190,812	185	65,455
장애수당	849	34,280	891	54,540	971	59,280	335	20,340
장애아동수당	12	1,320	12	1,320	12	1,320	4	440

■ 복지카드, 고속도로할인카드, 자동차표지 교부 등

○ 발급대상

■ 복지카드, 통합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통합복지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추가된 장애인 신분증

■ 자동차 주차표지 교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발급현황 (단위:건)

구분		2022	2023	2024	2025.4.
복지카드	일반	56	126	66	18
	통합	53	48	53	14
	계	109	174	119	32
자동차 주차표지		35	38	42	12

■ 장애인 일자리

○ 운영개요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및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사업목적: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확대 및 소득 보장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강화
- 참여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 사업유형 (단위: 원)

유 형		사업기간	근로시간	동업무	인건비(월)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12개월	주 40시간	행정도우미	2,096,270
	시간제		주 20시간		1,048,140
복지일자리		12개월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교통지도	561,980

○ 추진실적

(단위:명, 천원)

구 분	참여자 현황			지급액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2025.4.	2	0	2	21,183
2024	2	0	3	68,960
2023	2	0	3	67,618
2022	1	1	2	46,258

-연번 3-  
(용강동)

## 중점확인사항

(권인순 위원)

- 3-1. 자활근로사업 운영실태
- 3-2.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 3-1. 자활근로사업 운영실태

#### ○ 운영개요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및 제15조(자활급여)
- **사업목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생계 유지 및 탈빈곤 지원
- **참여대상:**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
- **사업유형:**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

구 분		실시기관
업그레이드형	시장진입형: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인턴형: 기업에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 복지·자활도우미형: 구 자활사업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보조·지원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향후 참여자의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근로유지형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지역자활센터, 구 직영

#### ■ 사업유형별 근로기준 및 임금

(단위:원)

구 분		시장진입형 ·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월평균 근로일수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근로 임금	지 급 액 (일)	64,220	56,210	32,980
	표준소득액(월)	1,565,720	1,357,460	753,480

#### ○ 운영실적

(단위:명, 천원)

구 분	참여자 현황		지급액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2025.4.	1	1	4,490
2024	0	2	13,551
2023	0	3	15,020
2022	2	3	44,672

○ 작성자: 윤지수(사회복지9급) ○ 검토자: 정기영(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장미정(용강동장)

### 3-2.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 ■ 거리환경지킴이(동 노인일자리)

##### ○ 사업개요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추진절차: 운영계획(구, 동) → 접수(동) → 활동관리(동)
- 사업내용

사업명	거리환경지킴이
유형	공익활동형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발	구(어르신동행과)에서 소득인정액, 세대구성, 활동역량 등을 토대로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거 선정
활동내용	동 환경 취약지역 중심으로 골목 청소, 무단투기 계도, 홍보 등
기타사항	· 어르신 10명당 팀장 1명 배정, 근무일은 날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안전교육 6시간 이상(필수)을 포함하여 활동교육 연간 12시간 이상 실시

##### ■ 운영현황

구분	2022	2023	2024	2025.4.
사업기간	2022.1.10. ~12.9.	2023.1.9. ~12.8.	2024.1.18. ~12.17.	2025.1.15. ~12.14.
사업유형	공익활동형	공익활동형	공익활동형	공익활동형
수행기관	동 주민센터: 구 직영 7개 동(공덕~신수동) 마포시니어클럽: 9개 동(서강~상암동)			
활동비	만근 시 월 27만원		만근 시 월 29만원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활동시간	월 30시간(일 3시간, 월 10회) *혹서기 및 혹한기는 근무시간 조정하여 운영			

##### ○ 추진실적

(단위: 명,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4.
배정인원	24	24	22	22
지급금액	70,548	65,167	66,739	21,297

■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 사업개요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추진절차: 운영계획(구, 동) → 접수(수행기관) → 활동관리(동)
- 기관별 역할

구청(어르신동행과)
- 동별 건의사항 수렴
- 활동 및 실적 관리
- 주기적인 활동 모니터링
- 보조금 교부

동주민센터
- 취약지역 선정
- 직무계획 수립
- 출근부 확인 및 수합·제출
- 동별 직무교육 수시 운영

수행기관(마포시니어클럽)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참여자 필수교육 실시
- 참여자 근무관리 및 임금지급
- 월별 활동 모니터링

■ 사업내용

사업명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유형	사회서비스형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발	수행기관(마포시니어클럽)에서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거 선정
활동내용	동 환경 취약지역 중심으로 환경보안관 활동
	- 에코리더(커피찌꺼기 수거 등)      - 클린마포(무단투기 상습구역 순찰·계도) - 녹색정비(틈새녹지조성 및 경관 개선)      - 안심마포(안전 취약지구 순찰)
기타사항	- 2인 1조로 활동, 날씨 등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우천 시 실내활동) - 안전교육(6시간), 소양교육(5시간), 직무교육(6시간) 총 17시간 이상 의무교육 실시

■ 운영현황

구분	2023	2024	2025
사업기간	2023.2.1.~ 11.30.	2024.2.1.~ 11.30.	2025.2.1.~11.30.
수행기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9개 동(공덕~서교동) 마포시니어클럽: 7개 동(합정~상암동)		마포시니어클럽
활동비	월 712,800원	월 761,040원	월 761,040원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활동시간	월 60시간(주 5일, 일 3시간) *혹서기 및 혹한기는 근무시간 조정하여 운영		

○ 추진실적

(단위: 명,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4.
배정인원	-	4	4	4
지급금액	-	28,512	30,441	9,132

○ 작성자: 신주연(행정7급) ○ 검토자: 정기영(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장미정(용강동장)

**중점확인사항**

(김승수 위원)

- 4-1. 기초연금 지급관리
  - 지급기준 및 접수실태
  -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 4-2. 효도밥상 운영에 관한 사항
- 4-3. 7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4-1. 기초연금 지급관리**

**■ 기초연금 지급기준 및 접수실태**

- **관련근거:** 기초연금법
- **추진목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 선정기준액('25년): 단독가구(2,280,000원)/부부가구(3,648,000원)
- **지급금액:**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급
  - \* 노인단독 또는 부부 중 1인 수급액('25년): 최저 34,250원 ~ 최고 342,510원 (부부가구 동시 지급 시 20% 감액 지급)
- **신청 및 책정현황** (단위:명)

추진기간	신청	책정	책정제외
2025.4.	54	34	20
2024	185	112	73
2023	172	103	69
2022	244	100	144

**■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 **수급 현황**(2025. 4.30. 기준): 1,126가구, 1,383명
- **지급 현황** (단위: 건, 천원)

추진기간	지급건수	지원금액
2025.4.	5,439	1,673,824
2024	16,090	4,808,183
2023	15,381	4,487,195
2022	15,039	4,163,363

\* 관내 전체 노인인구 (3,237명/'25.4.30. 기준) 대비 기초연금 수급률 42.72%

#### 4-2. 효도밥상 운영에 관한 사항

##### ○ 운영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목적:**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균형잡힌 식사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
- **이용자 선정기준**
  - 1순위: 국가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및 실제 1인가구인 자를 고령 순으로 선정
  - 2순위: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이나 실제 1인가구인 자를 고령 순으로 선정
  - 3순위: 그 외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자 고령 순으로 선정

##### ○ 운영현황(2025. 4.30. 기준)

급식기관	소재지	개소일자	현원/정원
1호점 (용강노인복지관)	토정로31길 31	2023. 4.24. (2025.2.28.중단)	31/35 (2025.2.28.기준)
2호점 (은강교회)	대흥로4길 46	2024. 4.22.	45/45 (남:14/여:31)
3호점 (대흥동태영 경로당)	독막로 266	2024.10.24.	35/35 (남:11/여:24)

※ 1호점 급식기관 운영 종료에 따라 2·3호점 이용 희망 어르신은 재배치 완료

#### 4-3. 7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2025. 4.30. 기준)

##### ○ 7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단위:명)

연 령	총 계		75-84세		85-94세		95세 이상	
인구수	1,452		1,030		385		37	
	남:561	여:891	남:421	여:609	남:132	여:253	남:8	여:29

##### ○ 7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단위:명)

연 령	총 계		75-84세		85-94세		95세 이상	
인구수	409		265		133		11	
	남:102	여:307	남:70	여:195	남:29	여:104	남:3	여:8

※ 7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 28.16%

-연번 5-  
(용강동)

## 중점확인사항

(한선미 위원)

- 5-1. 돌봄SOS사업 운영 실적
- 5-2. 긴급복지 지원실태
- 5-3.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 5-1. 돌봄SOS사업 운영실적

#### ○ 운영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 **사업대상:**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가구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 **이용자 선정기준:** 아래 4가지 적격 판단 기준 모두 충족 시 서비스 이용 가능
  - 현재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현재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 사항이 발생한 경우
- **사업내용:** 긴급하고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한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 유형		내용
일시재가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일상 편의 서비스	식사지원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도시락 배달
	동행지원	필수적인 외출활동(병원, 관공서, 은행) 동행하여 업무 보조
	주거편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및 청소, 방역, 세탁서비스 지원
	단기시설	당사자의 단기간 시설 입소
별도 지원	교통비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서비스 이용 시 지원(연 15만원)
	재료비	주거편의 서비스 이용 시 재료 구매비, 세탁비 지원(연 20만원)

※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이용금액 한도(1,800천원) 내 서비스 이용 한도(횟수) 제한 폐지

#### ○ 운영실적

(단위: 건, 천원)

구분	지원금액	지원건수	서비스 유형			
			일시재가	식사지원	동행지원	주거편의
2025.4.	12,572	42	12	8	5	17
2024	35,300	93	22	31	29	11
2023	51,641	148	31	65	30	22
2022	19,344	75	10	53	6	6

○ 작성자: 신주연(행정7급) ○ 검토자: 정기영(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장미정(용강동장)

## 5-2. 긴급복지 지원실태

- **관련근거:**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
- **지원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등이 곤란하며,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기준**
  - **국가형 긴급복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5년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 재산기준: 대도시 2억4천1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가능)
- 금융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 ■ 서울형 긴급복지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 재산기준: 4억9백만원 이하
- 금융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1천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지원내용(금액)**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비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주거비	398,900		662,500		874,100	
의료비	300만원 한도 (비급여 일부 항목 제외)					
교육비	초등학생	127,900	중학생	180,000	고등학생	214,000
연료비	150,000	해산비	700,000	장제비	800,000	전기 500,000원 이내

- **지원실적** (단위: 건, 천원)

구 분	국가형		서울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4.	3	3,730	11	10,206
2024	54	48,299	30	25,932
2023	54	54,552	40	30,617
2022	39	27,076	80	49,586

○ 작성자: 최한솔(사회복지7급) ○ 검토자: 정기영(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장미정(용강동장)

### 5-3.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 ○ 운영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7조
- **사업목적:** 사회적 고립가구를 상시 돌보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을 운영하여 고독사 예방 및 복지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절차:** 운영계획 및 접수(구) → 운영 및 관리(동)
- **사업내용**

구분	우리동네돌봄단
대 상	만 40~67세 마포구 거주 주민
선 발	신청자 중 구에서 선정
활동내용	·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확인(전화, 방문 등), 복지플래너 방문 보조 · 활동일지 작성, 자치모임 참석 및 사례공유 ·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연계
활동조건	월 48시간 내, 주 3일, 1일 4시간 이내
활 동 비	월 최대 396,000원(세전) ※ 월 48시간 활동 시 시간당 6,250원, 일일 식비 8,000원 별도 지원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운영실적

##### ■ 구성현황

(단위: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4
참여자	3	3	3	2
지원대상 (연 누계)	1,008	1,595	1,572	295

##### ■ 운영실적

(단위: 건)

구분	계	모니터링 실적		
		전화상담	가정방문	자원연계
2025.4	734	614	79	41
2024	3,973	3,211	490	272
2023	2,370	1,933	401	36
2022	2,609	2,239	212	158

-연번 6-  
(용강동)

## 중점확인사항

(고병준 위원)

- 6-1. 실뿌리복지 동행센터 운영실태 및 실적
- 6-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통장 운영
- 6-3. 후원(따뜻한겨울나기 등) 및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사업

### 6-1. 실뿌리복지 동행센터(舊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실태 및 실적

#### ○ 운영 실태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념:** ‘아이에서 어른까지, 사회적 약자부터 일반 주민까지’ 구민 모두의 삶에 스며드는 **촘촘한 복지**를 지향하는 마포형 동주민센터
- **개편사항:** 서울시 동행센터 개편에 따른 **복지·건강 중심** 동주민센터의 통합복지 전달체계 구축 (마을공동체, 우리동네 주무관 사업 종료)
- **추진방향**
  - 통합상담 강화, 취약계층 집중(선별) 방문, 빈곤·돌봄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1차적 방문 건강관리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중심으로 추진
  - 실뿌리 복지전달체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마포형 지역·주민밀착형 동 중심 복지지원 강화

분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변경 전)	실뿌리복지 동행센터(변경 후)	
복지	빈곤·돌봄위기가구 보편 방문	질적 방문 강화, 신규가구 발굴·방문강화	
	출산·양육가정 보편 방문	종료	
	65세 도래 어르신 보편 방문	종료	
건강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보편 방문	종료	
	건강 취약계층 방문	1차	동 방문간호사 건강평가 실시
		2차	복합만성질환
		계속관리	동 방문간호사 주기적 관리

#### ■ 운영추진체계



- **인력운영 현황:** 총 9명(주민복지팀 7명,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2명)

○ 운영 실적

■ 통합서비스 제공 실적

- 사회보장급여(사회복지서비스) 상담 및 신청 (단위: 건)

추진기간	상담건수	신청건수
2025.4.	1,147	550
2024	3,335	1,003
2023	3,510	1,059
2022	2,095	1,421

- 사례관리 추진 실적 (단위: 건)

추진기간	사례회의		사례관리		
	내부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서비스연계	동 사례관리	구 통합사례관리
2025.4.	13	1	2	1	-
2024	53	2	6	5	1
2023	39	3	11	5	2
2022	40	4	8	4	1

■ 복지·건강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실적

- 복지플래너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 (단위: 건)

추진기간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복지사각지대 발굴
2025.4.	287	79
2024	1,137	305
2023	1,131	215
2022	698	123

- 방문간호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명, 건)

관리대상	추진기간	방문간호서비스	보건복지 연계	
2025.4.	705	2025.4.	911	79
2024.12.	693	2024	3,394	465
2023.12.	595	2023	3,480	514
2022.12.	524	2022	2,379	306

■ 지역·주민밀착형 동 중심 복지지원 강화

- 실뿌리복지 동행단 구성 및 운영

· 구성현황: 총 52명(단장, 부단장, 총무 및 단원 49명)

· 운영실적

(단위: 명)

활동일자	활동내용	참여인원
2025. 4. 7.	텔레이 식목행사 참여(우리동네 키움센터 연계)	13
2025. 3. 20.	효도밥상 급식기관 환경정비('청소로 전하는 사랑의 효도밥상' 사업)	12
2025. 3. 13.	상반기 실뿌리복지 동행단 역량강화교육 참여	21
2025. 3월	복지사각지대 발굴('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용강 만들기' 사업)	6
2025. 2. 6.	실뿌리복지 동행단 회의(연간 사업 계획 수립)	5

○ 작성자: 최한솔(사회복지7급) ○ 검토자: 정기영(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장미정(용강동장)

## 6-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통장 운영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 운영개요

-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

#### ■ 역할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고독사 위험 가구 포함)
-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시행

- **구성현황:** 공동위원장(공공, 민간) 2명, 위원 12명 (단위:명)

합계	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	복지 통장	직능단체 위원	자원봉사 단체회원	교육복지 관계자	자영업자	기타 지역주민
14	1	2	1	4	2	1	1	2

#### ○ 운영실적

추진기간	회의개최	특화사업
2025.4	1회	- 2025년도 특화사업은 6월부터 진행 예정
2024	4회	- 사업명: “올시즌 용강” 취약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주민활동 지원사업 - 사업내용: 저소득 중장년 단독가구 대상 계절과일 및 계절 용품 지원 - 지원실적: 총 4회, 60가구 - 집행실적: 5,223,300원
2023	3회	- 사업명: “올시즌 용강” 용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당신의 사계절을 찾아 드립니다! - 사업내용: 저소득 중장년 단독가구 및 장애인가구 대상 계절과일 및 계절 용품 지원 - 지원실적: 총 4회, 60가구 - 집행실적: 6,255,200원
2022	3회	- 사업명: “용강동 행복하모니” 온가족 문화활동, 사공육공 겨울나기 - 사업내용: 한부모가구 문화체험활동 지원, 중장년 1인가구 대상 겨울맞이 용품 전달 - 지원실적: 총 2회, 40가구 - 집행실적: 4,178,300원

### ▣ 복지통장 운영

- **운영목적:** 주민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 및 지역 내 민간자원 협력체계 구축
- **역 할:**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저소득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실시 등
- **구성현황:** 통장 19명

○ 작성자: 배유리(사회복지8급) ○ 검토자: 정기영(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장미정(용강동장)

6-3. 후원(따뜻한겨울나기 등) 및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사업

▣ 후원(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 모금 현황

(단위: 건, 천원)

추진기간	구분	건수	금액
2024.11.15. ~ 2025.2.14.	성금	21	27,236
	성품	20	4,567
소계		41	31,803
2023.11.15. ~ 2024.2.14.	성금	35	29,385
	성품	36	13,622
소계		71	43,007
2022.11.15. ~ 2023.2.14.	성금	38	26,500
	성품	37	12,425
소계		75	38,925
2021.11.15. ~ 2022.2.14.	성금	41	23,939
	성품	25	29,069
소계		66	53,008

○ 지원 현황

(단위: 가구, 천원)

추진기간	성금품	가구수	금액
2024. 11. 15. ~ 2025. 2. 14.	백미	50	1,423
	김치	14	618
	기타(불고기, 떡 등)	142	2,526
소계		206	4,567
2023. 11. 15. ~ 2024. 2. 14.	백미	88	2,039
	김치	28	1,687
	기타(선물세트, 만두국 등)	306	9,896
소계		422	13,622
2022. 11. 15. ~ 2023. 2. 14.	백미	104	3,874
	김치	128	4,111
	기타(케이크, 짜장 등)	274	4,440
소계		506	12,425
2021. 11. 16. ~ 2022. 2. 14.	백미	159	5,647
	김치	138	11,523
	기타(이불, 한우사골 등)	546	11,899
소계		843	29,069

■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사업(2025년 사업명 변경: 주민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사업)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목적:**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거나 생활이 어려운 틈새계층의 주민을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 **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가구
- **지원기준**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5년	2,871,000	4,720,000	6,031,000	7,318,000	8,530,000	9,678,000
재산	- 일반재산: 4억 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효도건강의료비(65세 이상 치과치료비, 의료비) 환한미소찾아주기(65세 미만 치과치료비) 등

- **지원실적** (단위: 건, 천원)

구 분	총계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효도건강의료비 (65세 이상)		환한미소 찾아주기 (65세 미만 치과치료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4.	2	1,627	-	-	-	-	2	1,627
2024	20	17,846	7	4,996	9	8,850	4	4,000
2023	12	12,354	3	1,123	-	-	9	11,231
2022	7	7,341	2	341	-	-	5	7,000

※ 효도건강의료비(65세 이상 치과치료비, 의료비): 2024년 신설

중점확인사항 (차해영 위원)  
 7-1. 주거복지 추진실태  
 - 임대주택, 집수리사업, 주택마우처 등  
 7-2. 경로당 관리 현황

7-1. 주거복지 추진실태

○ 사업개요

구분		대 상	내 용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	- 생계·의료 수급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저소득가구	사업시행자(LH,SH)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저리로 전세 보증금 지원) 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		사업시행자(LH,SH)가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 범죄피해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집수리사업	희망의 집수리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가구	도배, 장판, 방수, 싱크대 교체 등 집수리 지원
	에너지 효율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단열·창호 지원,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보급
주거비지원	서울형 주택마우처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월 임대료 일부 지원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3만원 한도 내)

○ 추진실적

(단위: 건, 천원)

추진기간	임대주택 신청					집수리 사업 신청			서울형 주택마우처 (가구/천원)
	계	전세	매입	영구	수시	계	희망의 집수리	에너지 효율개선	
2025.4.	12	3	-	-	9	0	0	0	10/1,230
2024	86	23	17	21	25	3	3	0	36/3,065
2023	53	13	7	22	11	1	1	0	68/6,145
2022	50	9	14	20	7	3	1	2	87/10,020

○ 작성자: 윤지수(사회복지9급) ○ 검토자: 정기영(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장미정(용강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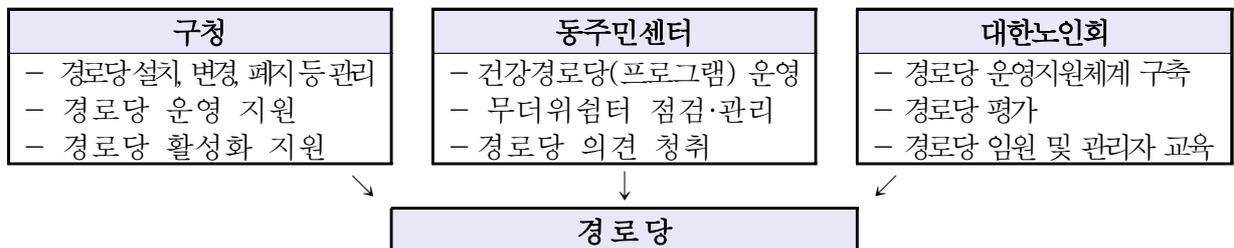
## 7-2. 경로당 관리 현황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47조(비용의 보조)
- **사업목적:** 노인의 여가선용과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 참여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이용을 독려
-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경로당 현황**(2025. 4.30. 기준) (단위: 명)

구분	경로당명	주소	회원수				형태	면적 (㎡)	개설일
			소계	남	여	평균 방문 인원			
1	태영 (아)201동경로당	독막로 266 (대흥동,태영아파트)	39	9	30	15	아파트 (임대)	210	00.08.29.
2	대흥동태영 (아)경로당	독막로 266 (대흥동,태영아파트)	50	11	39	25	아파트	229	96.12.12.
3	대흥동1경로당	독막로36길 16 (대흥동)	32	21	11	23	단독	73	77.05.01.
4	용강삼성래미안 (아)경로당	큰우물로 28 (용강동,래미안아파트)	24	1	23	18	아파트	73	03.11.26.
5	세양 (아)경로당	독막로 288 (대흥동,세양아파트)	33	3	30	12	아파트	24	05.10.14.
6	LG마포자이 (아)경로당	독막로42길 2 (염리동,마포자이)	30	15	15	6	아파트	81	04.07.29.
7	e편한세상 마포리버파크 (아)경로당	토정로31길 24 (용강동,미포리버파크)	27	6	21	16	아파트	97	15.09.30.
8	용강대림2차 (아)경로당	토정로32길 6 (용강동,e편한세상)	26	6	20	5	아파트	56	06.07.25.
9	토정한강삼성 (아)경로당	토정로32길 11 (토정동,한강삼성아파트)	28	9	19	12	아파트	100	98.03.23.

※ 관내 경로당 9개소 모두 사립으로 운영

### ○ 관리체계



### ○ 운영실적

(단위: 회)

구분	2022	2023	2024	2025.4.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24	16	5
무더위쉼터 관리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구급함 9개 배부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구급함 9개 배부	무더위쉼터 사전점검

○ 작성자: 신주연(행정7급) ○ 검토자: 정기영(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장미정(용강동장)

**중점확인사항**

(장정희 위원)

- 8-1. 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신청·지급현황
- 8-2.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결연사업
- 8-3.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지원 실적
- 8-4. 저소득주민(독거노인 포함) 방문행정

**8-1. 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신청·지급현황**

■ **보육료**

-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 **지급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
- **지급기준 및 금액**

(단위: 천원)

자격구분	지급대상	연령	정부지급단가	비고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0~5세	0세	540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
		1세	475	
		2세	394	
		3-5세	280	

■ **양육수당**

-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양육수당),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지급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 **지급기준 및 금액(2025. 4.30.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양육수당		비고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0~11개월	1,000	-	24개월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지급
12~23개월	500		
24~86개월	-	100	

○ **보육 서비스 신청현황**

(단위: 건)

추진기간	계	보육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2025.4.	193	116	43	34
2024	333	170	118	45
2023	402	208	119	75
2022	440	202	128	110

■ 출산축하금 신청·지급 현황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지급대상: 2011. 1. 1. ~ 2021. 12. 31. 이전 출생아
  -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금액

대 상	첫 째	둘 째	셋 째	넷 째	다섯째 이상
지급액	10만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지급현황 (단위: 건, 천원)

구	2022		2023	
	신청건수	지급금액	신청건수	지급금액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비장애인	4	400	-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	-	1	1,000

※ 2022.1.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으로 지급

■ 첫만남이용권 신청·지급 현황

- 관련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항~제6항
- 지급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지급금액: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
- 지급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4.
신청건수	127	116	117	44
지급금액	254,000	230,000	271,000	98,000

## 8-2.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결연사업

### ▣ 희망은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 ○ 모금 현황

(단위: 건, 천원)

추진기간	구분	건수	금액
2024.11.15. ~ 2025.2.14.	성금	21	27,236
	성품	20	4,567
소계		41	31,803
2023.11.15. ~ 2024.2.14.	성금	35	29,385
	성품	36	13,622
소계		71	43,007
2022.11.15. ~ 2023.2.14.	성금	38	26,500
	성품	37	12,425
소계		75	38,925
2021.11.15. ~ 2022.2.14.	성금	41	23,939
	성품	25	29,069
소계		66	53,008

#### ○ 지원 현황

(단위: 가구, 천원)

추진기간	성금품	가구수	금액
2024. 11. 15. ~ 2025. 2. 14.	백미	50	1,423
	김치	14	618
	기타(불고기, 떡 등)	142	2,526
소계		206	4,567
2023. 11. 15. ~ 2024. 2. 14.	백미	88	2,039
	김치	28	1,687
	기타(선물세트, 만두국 등)	306	9,896
소계		422	13,622
2022. 11. 15. ~ 2023. 2. 14.	백미	104	3,874
	김치	128	4,111
	기타(케이크, 짜장 등)	274	4,440
소계		506	12,425
2021. 11. 16. ~ 2022. 2. 15.	백미	159	5,647
	김치	138	11,523
	기타(이불, 한우사골 등)	546	11,899
소계		843	29,069

■ 연중 후원금·품 지원 현황(따뜻한겨울나기 기간 제외)

○ 지원 실적

(단위: 가구, 천원)

추진기간	후원금품 내용	지원가구	지원금액
2025.4.	밀반찬	28	1,088
	떡, 죽 등	100	952
	<b>소계</b>	<b>128</b>	<b>2,040</b>
2024	밀반찬	91	3,738
	떡, 죽 등	684	4,253
	추석 선물세트	100	5,000
	생일 케이크	20	500
	현금	2	1,000
	<b>소계</b>	<b>897</b>	<b>14,491</b>
2023	밀반찬	104	5,265
	떡, 치킨 등	344	2,408
	생일 케이크	20	500
	현금	5	1,896
	<b>소계</b>	<b>473</b>	<b>10,069</b>
2022	밀반찬	117	4,797
	떡, 치킨 등	290	1,427
	생일 케이크	20	460
	현금	5	2,000
	<b>소계</b>	<b>432</b>	<b>8,684</b>

○ 기타지원

(단위: 가구, 천원)

추진기간	후원금품 내용	지원가구	비고
2025.4.	떡국떡	32	구청, 복지재단 등에서 동으로 배분하여 지원
2024	식품꾸러미, 과일 등	234	
2023	김치, 백미, 화장품 등	114	
2022	김치, 백미 등	180	

### 8-3.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지원 실적

- **관련근거:** 「마포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
- **지원대상:** 마포구 저소득 주민 중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및 실직 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자

#### ○ 지원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5년	1,674,409	2,752,860	3,517,747	4,268,441	4,975,734	5,645,363

- 재산기준: 1억3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금융재산)

#### ○ 지원내용(금액)

- 특별생계비 지원: 2025년 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연 1회 제한)
- 공공요금 체납분: 최대 50만원 한도(2년 1회 제한)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특별생계비	358,000	589,000	753,000	914,000	1,066,000	1,209,000
공공요금 체납분	건강보험료 및 전기, 수도, 가스요금(관리비는 제외) / 최대 50만원 한도					

#### ○ 지원실적

(단위: 건, 천원)

추진기간	계		특별생계비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4.	2	716	2	716	-	-
2024	25	10,871	20	8,494	5	2,377
2023	37	14,548	30	12,418	7	2,130
2022	41	15,856	37	14,327	4	1,529

### 8-4. 저소득주민(독거노인 포함) 방문행정

#### ○ 추진개요

■ 방문대상: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및 전입·신규 책정 수급자 등

- 모니터링 대상자 현황(2025. 4.30. 기준)

(단위: 가구, 명)

구분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가구	431	367	59	5
인원	590	478	107	5

※ 기타: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로 복지급여 중지되었으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자 등

#### ■ 추진절차

- 개별 가구에 대한 모니터 계획수립(위기도에 따른 상담 주기 설정)
- 대상가구 모니터 상담 후 복지서비스 연계, 행복e음 상담결과 등록

※ 위기도 분류표(동별 현장 상황에 맞게 위기도 단계 조정 가능)

위기도	내용	상담주기
위기 (5단계)	- 장애·노인·질병 1인 가구 중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이 의심되며, 주변에 돌봄 가능한 가족·친지 등이 없는 가구	격주 1회
심각 (4단계)	- 일상생활관련 욕구와 자발적 문제해결 능력 관련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진 가구 - 정신장애인가구, 해체위기가구, 조손가구 등 개별서비스 연계 외에 상담, 치료, 생활관리 등 서비스 통한 기능회복 필요 가구 - 장애·노인·질병 1인가구 중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2인 가구 중 1인이 장애 또는 질병으로 기본생활이 어려운 가구 - 통반장 등에 의해 위기상황으로 신고된 가구 등 -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우울 등)이 의심되며 주의가 필요한 가구	월 1회
경계 (3단계)	- 외부 사회서비스 지원 중인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방문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등)	분기 1회
주의 (2단계)	-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순한 욕구를 가진 가구 (단순서비스 가구: 금품 후원, 급식지원, 집수리 등)	반기 1회
관심 (1단계)	- 공공부조 및 법정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이 가능한 가구 (현 보장내용 외 기타 다른 욕구가 없거나 잠재된 가구) - 장기입원 등으로 사례관리 추진이 불가능한 가구	연 1회

#### ○ 추진실적(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실적)

(단위: 건)

계	2022	2023	2024	2025.4
3,253	698	1,131	1,137	287

○ 작성자: 최한솔(사회복지7급) ○ 검토자: 정기영(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장미정(용강동장)

-연번 9-  
(용강동)

## 중점확인사항

(장영준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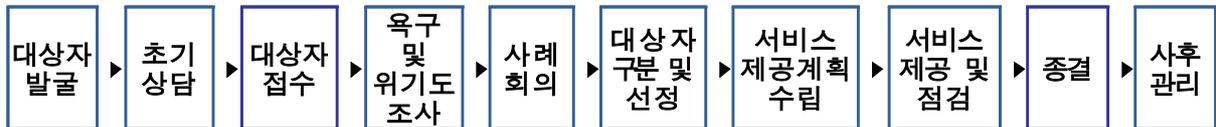
### 9-1. 사례관리 진행현황

#### 9-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한부모 신청·접수 추진실태

### 9-1. 사례관리 진행현황

#### ○ 추진개요

-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 사업대상: 가구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
- 선정기준: 위기도 및 욕구조사 실시 후 사례회의를 거쳐 선정
  - 서비스연계 가구: 단편적 욕구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
  - 동 사례관리 가구: 복합적 서비스 제공 및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
  - 구 통합사례관리 가구: 전문 사례관리사의 개입이 필요한 고난도 사례
- 추진절차



#### ○ 추진실적

-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사례관리위원회 위원 구성현황(2025. 4.30. 기준) (단위: 명)

계	공공기관		민간기관 (복지관 및 협력기관)
	동 주민센터	구(지역복지팀, 드림스타트팀)	
16	9	2	5

- 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 건)

추진기간	사례회의		사례관리		
	내부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서비스연계	동 사례관리	구 통합사례관리
2025.4.	13	1	2	1	-
2024	53	2	6	5	1
2023	39	3	11	5	2
2022	40	4	8	4	1

○ 작성자: 최한솔(사회복지7급) ○ 검토자: 정기영(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장미정(용강동장)

## 9-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신청·접수 추진실태

###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급여의 신청)

###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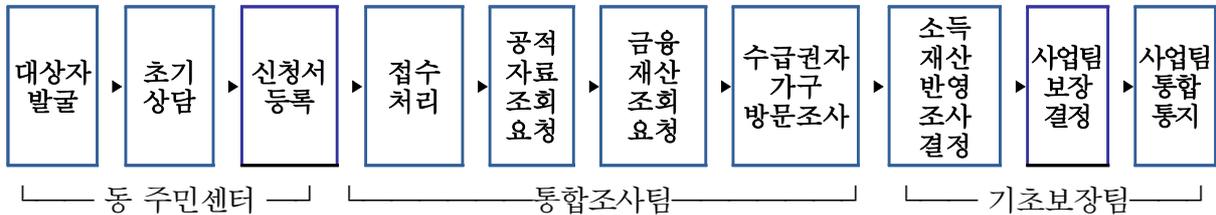
#### ■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 신청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신고서, 주거관련서류,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 업무 처리 절차



### ○ 신청접수 및 책정현황

(단위:가구)

추진기간	신청			책정			
	합계	국민기초 (차상위포함)	한부모	합계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2025.4.	111	109	2	41	36	4	1
2024	194	189	5	115	106	8	1
2023	216	212	4	91	80	9	2
2022	193	187	6	108	98	8	2

※ 차상위 및 한부모의 경우, 구 통합조사팀에서 자산조사 결과 선정기준 적합할 경우 연계 책정

MADQ